국회경위처법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7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권칠승·조계원·민병덕

소병훈 • 박용갑 • 임호선

김태선 · 서미화 · 송옥주

김준형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2조).
- 나.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 임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국회경위 처의 조직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경위처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국회경위처(이하 "경위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 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 제3조(직무) 경위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국회(의장공관을 포함한다)의 경호, 방호 및 경비
 - 2. 의장 및 부의장의 경호
 - 3.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 4. 국회 출입의 안전검색 및 관리
 -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처장) ① 국회경위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②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위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경위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 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

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 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국회경위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경위처장추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경위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 적에 관한 사항
 -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 라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임용) 경위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① 경위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 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이나 특정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 또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 수 있다.
- ④ 경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위처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권한 남용 금지 등) ① 경위처의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 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질서유지를 수행

할 때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위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2.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13조(벌칙)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을 "청사 관리 및 후생"으 로 한다.